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체계화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98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4.
3. 회부연월일 : 2025. 4.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처리 시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유치원의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22조제5항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개별화교육)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2조(개별화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u>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u>수립·실시</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 ----- ----- <u>제2항 및 제5항</u> ----- ----- <u>수립·실시·처리</u> ----- ----- -----.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¹⁾, 개별화교육계획은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장애와 관련된 각종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교육 지원 계획을 의미함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2조³⁾는 개별화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각급학교의 장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하고(제1항)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하며(제2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송부(제3항)하여야 함.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 국립특수교육원, 2019.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법 제22조제5항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과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4)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시기와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시기, 작성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⁵⁾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이 가능하지만 법령상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에서도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교별 결정이나 교사의 필요에 따라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학교 자체 서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일관적인 지침이 부재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별, 학교 유형별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됨.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시도교육청별 교육정보시스템 개별화교육계획 사용 현황 >

구분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IEP) 사용 현황	비고*
서울	·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처리 근거가 없어 의무화는 안하고 있음. · 의무화 위해 법적 근거(훈령 등) 필요하며, 전체 현황은 조사된 바 없음	
부산	· 2016년부터 개별화교육계획 나이스 입력 의무화 시행(공문 안내)	특수학교(급)
대구	· 특수학교: 전체 사용 중 · 특수학급: (초등) 전체 사용, (중·고등) 수행평가 등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사용	특수학교, 특수학급(초)
인천	· 한 개 학교만 사용, 자율화 후 나이스 전환이 거의 없는 상황임	
광주	· 특수학교: 전체 사용(사립 제외) · 특수학급: 많은 수 사용, 단 현황은 미조사	특수학교
대전	· 자율 운영이지만 특수학교, 특수학급 대부분 나이스로 작성 중	
울산	· 특수학교는 모두 사용, 일반학교는 267개교 중 162개 사용 중	특수학교
세종	· 권장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나이스 안됨	
경기	· 자율 운영	
강원	· 특수학교 의무, 일반학교 선택지침 필요	특수학교
충북	· 특수학교는 대부분 나이스 사용, 일반학교는 수기 입력이 많음	특수학교
충남	· 특수학교: 전체 사용, · 일반학교: (초등) 70% 정도, (중·고등) 거의 미사용	특수학교
전북	· 자율 운영 중이나 대부분 나이스를 사용함	특수학교(급)
전남	· 특수학교, 특수학급 나이스 작성, 순회교육 수기(나이스 의무 권고)	특수학교(급)
경북	· 자율 운영	
경남	· 자율 운영, 나이스 권장	
제주	· 특수학교 모두 사용 · 특수학급(중·고등)은 교과 때문에 많이 사용 안 함	특수학교

자료: 교육부

(기준: 2021. 7. 16.)

*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의무 사용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 중인 학교(학급) 현황

이에 개정안은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처리 시에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⁶⁾.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을 이용하는 경우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보의 관리 및 보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전출입 및 상급학교 진학 시 개별화교육계획의 송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학교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계획 수립 및 학생 지원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다만, 표준화·획일화된 시스템 서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개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맞춤형 계획 수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히 중·고등 과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교과과목과 평가방식 등이 다양하여 유연한 계획 수립·작성이 필요한 데 비해 시스템이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에 앞서 교육정보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6)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규정상 유치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시스템 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할 수 있는바,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유치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별화교육 계획 작성은 행정 업무 경감,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 관리 등의 장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급학 교의 재량에 따라 작성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학교 간 자료의 연계와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 리하도록 함으로써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아울러,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사업 시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의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유치원까지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의 기능 개선을 추진하 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다수 시·도교육청⁷⁾에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은 교육정보시 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학교(급)별 여 건, 교육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성 방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7) 서울,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문 의 처
02)6788-5186